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
보험료 지원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19일(월)

나. 제출자 : 이필례 의원 외 3명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2년 11월 22일(목)

4. 관계법령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법률 제11248호, 2012.8.2 시행) 제5조

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(법률 제11141호, 2012.9.1 시행) 제69조

다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법률 제11141호, 2012.9.1 시행) 제9조

5. 검토의견

- 0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.
- 0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 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 세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.
- 0 안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월별 1만원 이하 부과 대상 저소득주민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808명, 장애인 세대 378명, 한부모세대 65명 등 총 1,251세대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약 70,000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소요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이미 계산하였음.

0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회시된바 있음.

【관계법령】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[시행 2012.8.2] [법률 제11248호, 2012.2.1, 일부개정]

- 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.
-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9.1] [법률 제11141호, 2011.12.31, 전부개정]

- 제75조(보험료의 경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.
1. 섬·벽지(僻地)·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
 2. 65세 이상인 사람
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
 5. 휴직자
 6.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-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[시행 2012.9.1] [법률 제11141호, 2011.12.31, 타법개정]

- 제9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)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